

안산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8-485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0. 11. 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□ 제안이유

- 시 소관 국가소송에 대해 변호사 선임 지원 확대
 - 시 소속 공무원이 소송수행자로서 지정되는 국가소송에 대해 변호사 선임의 지원을 확대하여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소송 대응으로 민원 조기 해결 도모
-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확대
 - 폭언, 성희롱 등 피해를 입은 공무원 및 콜센터 상담사 등 정당한 공무를 처리하는 공무수행자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확대로 공무수행의 안정성 확보
- 2차 가해에 대한 대비책 마련으로 지원의 실효성 확보
 - 피해 공무원 등의 동의를 얻어 변호사 선임비용을 대신 지출한 자 또는 단체 등에 대해서도 비용을 사후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원의 실효성 제고

□ 주요내용

- 고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할 수 있는 소송의 범위를 현 “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”에 추가하여 “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라 시 소속 공무원이 소송수행자로서 수행하는 국가소송”으로 확대함 (안 제4조1항 각 호 신설)
- 변호사 선임비용의 지원대상자를 현 “시 소속 공무원”에 추가하여 “관계 법령에 따라 시의 공무를 처리할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 등(이하 “공무수행자”라 한다)”으로 확대함 (안 제5조제1항)

- 피해 공무원을 대신하여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한 자 또는 단체 등에 대해서도 사후 비용지급 규정을 신설함 (안 제5조제5항 신설)
 - 대상자 확대에 따른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개정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 제소 또는 피소된 사건부터 적용함 (부칙 제2조)
-
- 개정조례안** : 붙임1
 - 신·구조문대비표** : 붙임2
 - 관계법령발췌서** : 붙임3
 - 관련사업계획서** : 해당사항 없음
 - 예산수반사항**
 -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(붙임4)
 - 사전예고(결과)** : 의견 없음
 - 입법예고 : 2020. 9. 16. ~ 2020. 10. 7. (21일간)
 - 기타 참고사항**
 - 현행조례** : 붙임5
 - 방침결정문** : 붙임6

< 불임 1 >

안산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고문변호사를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” 를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에 대해 고문변호사를”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
2.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라 시 소속 공무원이 소송수행자로서 수행하는 국가소송

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공무원” 을 “공무원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시의 공무를 처리할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 등(이하 “공무수행자” 라 한다)” 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공무수행자의 동의를 얻어 변호사 선임비용을 대신 지출한 자 또는 단체 등에 대해서도 추후 공무수행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)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피소되거나 제소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소관 실·과		혁신법무과
입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혁신법무과장 박 근 호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송무팀장 김 행 련
	담당자 성명·전화	노 다 지 (행정 2830)

[별표 1]

소송비용지급기준

구분 소송별	지급기준			소송비용 청구시 구비서류
	내용	착수금	승소사례금	
민 사 소 송	신청 사건	· 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50 이하	· 신청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150	· 청구서
	본안 사건	· 「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」에서 정하는 금액 ※ 단, 위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만원	· 완전승소 : 착수금의 100분의 150 · 60%이상 승소(화해의 성립, 조정결정의 취지가 60%이상 승소인 경우 포함) :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· 청구의 포기, 인낙, 소취하 (쌍방취하를 포함한다) : 착수금의 100분의 50 (단, 변론없이 종결된 경우와 조건부 취하는 지급제외)	1. 착수금 청구시 · 청구서 · 소가증명원 2. 승소사례금 청구시 · 사건확정증명원 · 소취하서 등 해당서류
	환송심	· 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50 이하	상동	상동
행 정 소 송	신청 사건	민사소송과 동일	민사소송에 준함	민사소송에 준함
	본안 사건	민사소송과 동일	민사소송에 준함	민사소송에 준함
	환송심	민사소송과 동일	민사소송에 준함	민사사송에 준함

구분 소송별	지급기준	청구시 구비서류
기 타 소 송 비 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인지대 : 실제로 소요된 금액 · 송달료 : 실제로 소요된 금액 · 검증비 : 실제로 소요된 금액 · 감정료 : 실제로 소요된 금액 · 출장비 및 여비 : 「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」 별표에 따른 금액 · 기타비용 : 실제로 소요된 금액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청구서 · 검증비, 감정료 등 납부명령 사본 및 관련 영수증 각 1부

- ※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차수금과 승소사례금은 각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.
- ※ 다음 각 목의 경미한 사건의 경우 차수금을 100분의 50 이내로 감액 지급할 수 있다.
 - 가. 민사 소액사건 또는 단독사건에서 패소한 상대방이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한 경우로 승소의 가능성이 높은 소송
 - 나. 이미 시를 상대로 쟁송을 진행 중인 자가 그 주된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제기한 소송
 - 다. 시가 공동피고로 지정된 사건 중 원고와 시 이외의 피고간의 권리관계 또는 사실관계에 따라 우리시의 결과가 결정되는 소송
 - 라. 그 밖에 사안이 경미하여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승소의 이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소송

※ 지급기준이 되는 소가의 산정시점은 소제기시를 원칙으로 하되, 소가의 변동이 예측되는 경우에는 청구시를 산정시점으로 한다. 이때, 그 지급액은 소송기여도에 따라 협의로써 조정 할 수 있다.

< 불임 2 >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소송비용 등) ① 시장은 고문변호사 를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대리인으 로 선임할 경우 별표 1의 지급 기준에 따라 각 심급별로 그 비용을 지급한다.	제4조(소송비용 등) ① -----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에 대해 고문변호사를 ----- ----- -----. 1.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2.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라 시 소속 공무원 이 소송수행자로서 수행하는 국가소 송 ② ~ ⑥ (현행과 같음)
제5조(변호사 선임비용 지원) ①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 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로서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 한 경우 별표 2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에 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.	제5조(변호사 선임비용 지원) ① ----- ----- 공무원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시의 공무를 처리할 권한을 부여받은 사 람 등(이하 “공무수행자”라 한다) ----- ----- ----- ----- 1. ~ 5. (현행과 같음) ②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공무수행자의 동의를 얻어 변호사 선 임비용을 대신 지출한 자 또는 단체 등 에 대해서도 추후 공무수행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.
1. ~ 5. (생략) ② ~ ④ (생략) 〈신설〉	1. ~ 5. (현행과 같음) ②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공무수행자의 동의를 얻어 변호사 선 임비용을 대신 지출한 자 또는 단체 등 에 대해서도 추후 공무수행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.

[별표 1]

소송비용 지급기준

구분 소송별	지급기준			소송비용 청구서 구비서류
	대 용	국수금	승소사례금	
민 사 소 송	신정 사건	· 본안사건 확수금의 100분의 50 이하	· 진동사건 확수금의 100분의 150	· 청구서
	본안 사건	· 「판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」에 따른 경과 시작일로부터 60일 까지는 원고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만원	· 판결출소 : 국수금의 100분의 150 · 60%이상 출소화해의 성립, 조정결정의 취지가 60%이상 승소인 경우 (3회) : 확수금에 승소금액을 포함한 금액 · 청구액 조기, 일부, 소송해 (양방통장을 포함한다) : 국수금의 100분의 50 (단, 변론없이 종결된 경우와 조관부 위하는 저급제외)	1. 국수금 통지서 · 청구서 · 소송개시증
	회수금	· 본안사건 확수금의 100분의 50 이하	상 등	상 등
행 정 소 송	신정 사건	민사소송과 동일	민사소송에 준함	민사소송에 준함
	본안 사건	민사소송과 동일	민사소송에 준함	민사소송에 준함
	회수금	민사소송과 동일	민사소송에 준함	민사소송에 준함

* 다른 각 목의 경미한 사건의 경우 확수금을 100분의 50 이내로 감액 지급할 수 있다.

가. 민사 소액사건 또는 단독사건에서 폐소한 상대방이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한 경우로 승소의 가능성이 높은 소송

나. 이미 대로 행정을 진행 중인 자가 그 주된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제기한 소송

다. 시기 통통비고로 지정된 사건 중 원고와 시 이의의 비교간의 권리관계 또는 사실관계에 따라 우리나라의 법리가 결정되는 소송

라. 그 밖에 시인이 경미하여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승소의 이익이 크지 아니하고 그 원인으로 경미하여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승소의 이익이 크지 아니하고 그 원인으로 경미하는 소송

* 자금기준이 되는 소가의 산정사건은 소제기사를 원칙으로 하되, 소가의 변동이 예측되는 경우에는 청구서를 산정사건으로 한다. 이때, 그 금액은 소송기여도에 따라 협의로써 조정할 수 있다.

[별표 1]

소송비용 지급기준

구분 소송별	지급기준			소송비용 청구서 구비서류
	대 용	국수금	승소사례금	
민 사 소 송	신청 사건	· 본안사건 확수금의 100분의 50 이하	· 신청사건 확수금의 100분의 150	· 청구서
	본안 사건	· 「판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」에 따른 경과 시작일로부터 60일 까지는 원고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· 청구액 조기, 일부, 소송해 (양방통장을 포함한다) : 국수금의 100분의 50 (단, 변론없이 종결된 경우와 조관부 위하는 저급제외)	· 판결출소 : 확수금의 100분의 150 · 60%이상 출소화해의 성립, 조정결정의 취지가 60%이상 승소인 경우 포함) : 확수금에 승소비리를 포함한 금액 · 청구액 조기, 일부, 소송해 (양방통장을 포함한다) : 국수금의 100분의 50 (단, 변론없이 종결된 경우와 조관부 위하는 저급제외)	1. 국수금 청구서 · 소송개시증
	회수금	· 본안사건 확수금의 100분의 50 이하	상 등	2. 승소사례금 청구서 · 산정사건증명서 · 소송해서 등 증빙서류
행정 소 송	신청 사건	민사소송과 동일	민사소송에 준함	민사소송에 준함
	본안 사건	민사소송과 동일	민사소송에 준함	민사소송에 준함
	회수금	민사소송과 동일	민사소송에 준함	민사소송에 준함

* 다른 각 목의 경미한 사건의 경우 확수금을 100분의 50 이내로 감액 지급할 수 있다.

가. 민사 소액사건 또는 단독사건에서 폐소한 상대방이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한 경우로 승소의 가능성이 높은 소송

나. 이미 대로 행정을 진행 중인 자가 그 주된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제기한 소송

다. 시기 통통비고로 지정된 사건 중 원고와 시 이의의 비교간의 권리관계 또는 사실관계에 따라 우리나라의 법리가 결정되는 소송

라. 그 밖에 시인이 경미하여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승소의 이익이 크지 아니하고 그 원인으로 경미하는 소송

* 지급기준이 되는 소가의 산정사건은 소제기사를 원칙으로 하되, 소가의 변동이 예측되는 경우에는 청구서를 산정사건으로 한다. 이때, 그 금액은 소송기여도에 따라 협의로써 조정할 수 있다.

구분 소송별	지급기준			청구서 구비서류
	기 타	승 답 로	검 증 비	
소 송 비 용	· 인지대 : 실체로 소요된 금액 · 승답로 : 실체로 소요된 금액 · 검증비 : 실체로 소요된 금액 · 감정료 : 실체로 소요된 금액 · 출장비 및 여비 : 「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」 별표에 따른 금액 · 기타비용 : 실체로 소요된 금액	· 청구서 · 결재비, 감정료 등 · 남부행정 사본 및 관련 영수증 각 1부		